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임기추[†]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년 1월 29일 접수, 2015년 4월 8일 수정, 2015년 4월 10일 채택)

A Study on Policy Recommendations for Post-Monitoring System of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Ki Choo, Lim[†]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Received 29 January 2015, Revised 8 April 2015, Accepted 10 April 2015)

요 약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시행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률 또는 반복적 위반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수시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주요어 :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Abstract - This study suggests a few solutions to improve the post-monitoring activities under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First, samples should be selected from each category for the post-monitoring activities, taking account of the consumer's continuous buying behavior, while it is also important to form and operate a deliberation committee. Secon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checking process of the label content of 9 items which have never been violated the labeling regulation since 2005. This study suggests the detailed checking of label contents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measurement of 17 items which have violated labeling more than once over the past few years. Thir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ntire post-monitoring process should be disclosed and be posted on the websites of related agencies and on the Internet in general.

Key words :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post-monitoring program

[†]To whom corresponding should be addressed.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Ulsan 681-300, Korea
Tel : 052-714-2295 E-mail : kclim@keei.re.kr

1. 서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는 1992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효율등급제의 대상품목은 전기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35개 품목으로, 모든 기준과 측정방법 등은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2,5].

이 제도는 대상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효율기준의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MEPS)을 적용하는 의무 제도이다. 즉,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효율 등급라벨 등의 의무표시와, 의무적인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1,5].

이러한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는 유통 중인 등급 표시제품을 수거하여 신고·표시내용과 효율등급 등의 측정치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및 수입업자(수입제품)는 1)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라벨 표시(에너지효율 등급라벨 의무 표시), 2) 시험 후 제품의 의무적 신고, 3) 5등급 기준 미달제품의 생산·판매 금지(최저소비효율기준 의무 적용) 등의 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고, 35개 전체 대상품목에 대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며,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급표시 위반과 허용오차 초과 시 시정 및 등급재신고, 행정명령 위반 시에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5].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사후관리 시행결과 사후관리 대상모델이 과소한 상황에서 생산·판매 금지, 등급조정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여부, 유사모델의 생산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에는 전체 등급제 대상모델 29천여 개 중

에서 총 228개 모델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209개 모델이 합격하였으며 전기드럼세탁기, 선풍기, 전기스토브 등 11개 품목의 21개 모델이 불합격되었다. 위반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 금지, 등급조정을 명령하고 위반사실을 외부에 공포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되므로 업체에 큰 타격이 되지만,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6].

본고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7]를 감안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사후관리 대상의 제품 선정 및 확보방식, 사후관리 대상의 사후관리 점검방식, 사후관리 확대 및 사후관리 점검결과와 정보공개 측면에서 관련 보완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2.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점검내용 및 문제점

2-1.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사후관리 대상품목

에너지효율등급제의 대상제품은 2014년 현재 에너지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라벨 품목 35개 품목으로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등이다. 이 중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라벨 품목은 11개 품목으로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등이다 [2].

2-2.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법적 근거 [1,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

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동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각호의 내용은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사후관리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각호의 내용은 1) 전년도에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효율관리기자재, 2) 전년도에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효율관리기자재의 다른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는 제2장 제4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제5조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의 적용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효율표시와 관련하여 제15조에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표시의무, 제16조에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에 대해 제시하고, 제6장 사후관리에서 제18조에 사후관리에 대한 검사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제15조에 의거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표시의무에 따른 표시 의무의 이행상태, 사후관리 시료의 측정결과와 표시한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내용의 일치 여부, 제16조에 의거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에서 제4항 제조일자 기준 표시에 따른 광고 내용에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의 포함여부, 제18조에 의거 사후관리에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 2에 의거 이해관계자의 사후관리 참가에서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시중에서 자유롭게 효율관리기자재를 채취하여 효율관리시험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에서는 사후관리 결과조치 및 청문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위반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위반사항은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여부,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가리킨다.

2-3.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모델 선정 방법

품목별 사후관리 대상 목표수립 시에 판매실적이 우수하고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주요 가전·사무기기 중 신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확대하고 있는데, 관련품목은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세탁기 등이다. 과년도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의 제품 및 위반업체의 모델 등을 수거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품목 : 선풍기, 어댑터·충전기, 조명기기 등을 들 수 있다.

사후관리 조사 및 시료수거의 경우 전문 판매업소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조·수입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고, 조달품목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구입하여 확보하고 있다. 주로 시료수거 경로 다각화를 통한 사후관리 신뢰도 제고 추진, 인터넷 쇼

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매장에 대한 시료수거 확대 실시, 가전제품의 경우, 전자제품 전문점, 대형 유통점 및 백화점 등 다양한 경로로 시료를 수거하여 업체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시료수거 대상 선정방법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량이 많은 주력모델, 사후관리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및 위반업체 제품 및 기타 제도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모델 등으로 선택하고 있다. 제조·수입업체별 판매량이 많은 주력모델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량이 많은 주력모델로, 최근 생산·판매실적 우수모델 및 현재 주력 판촉제품을 선정한다. 사후관리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및 위반업체 제품은 과년도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및 위반업체의 주요 모델, 타 기관(한국소비자원 등) 사후관리 위반모델로 통보된 제품, 시중 유통량이 많은 품목 중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예상되는 모델로 한다. 기타 제도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모델은 측정방법이 변경된 품목 및 효율등급기준 등이 강화된 품목, 고시된 기준과 신고값의 차이가 작은 제품 등으로 선정한다 [8-14,2].

2-4.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조사 모델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조사 모델수는 2012년 228개 모델로, 이는 대상 전체 모델 28,626개 중에서 약 0.8%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사후관리 관련 시험의뢰는 지정시험기관의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시험을 의뢰하되, 시험결과 편차 최소화를 위해 동일 품목은 한 시험기관에 배정하고, 기술표준화사업의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개발 등과 관련하여 시험기관의 시료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 [2-5].

시험기관별 사후관리 시험결과 확인 및 정리는 제도별 기준 만족 및 제품 신고여부, 품질수준 유지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심의회의 실시에 의한다. 즉, 의견청취를 통한 위반업체의 시험결과 인정여부 확인 및 심의회의 개최로 위반업체에 대한 재시험 기회 부여 여부 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2-5.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위반제품에 대해 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등급조정, 표시사항정정 등의 시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제조·

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다 [4].

2008년 이후 사후관리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전기냉방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2009년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충전기 등의 제품이 생산·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2010년과 2011년에 전기진공청소기, 2012년 어댑터·충전기 제품이 생산·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2,6,10-14].

등급표시정정 제품의 경우에는 2008년 전기냉방기, 전기밥솥, 선풍기, 안정기 내장형 램프, 2009년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의 제품이 등급표시정정 처분을 받았다. 2010년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형광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 2011년 김치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전기진공청소기, 2012년 전기드럼세탁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등의 제품이 등급표시정정 처분을 받았다 [2,6,10-14].

표시사항정정 제품은 2008년 전기냉장고, 선풍기, 2009년 선풍기 등의 제품이 표시사항정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0년 선풍기, 안정기내장형램프, 2011년 전기드럼세탁기, 전기진공청소기, 형광램프용안정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상업용전기냉장고, 2012년 선풍기,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등의 제품이 표시사항정정 처분을 받았다.

기타 등급표시 명령 제품의 경우 2005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2006년 안정기 내장형 램프, 2007년 김치냉장고, 안정기 내장형 램프 등의 제품이 등급미표시(미신고)로 점검되어 등급표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2,6,10-14].

2-6.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제품별 위반모델수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점검결과 지난 5년간 위반제품이 전혀 없는 제품은 9개 제품으로 확인된다. 자세히 열거해 보자면 2005년 이후 사후관리 점검결과 1회라도 위반조치가 없는 제품으로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난방기 등 9개 제품이 있다. 2008년 이후 사후관리 점검결과 3회 이상 위반조치가 있는 제품을 보면 전기냉장고,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3개 제품이 있으며, 2회 위반조치가 있는 제품은 전기드럼세탁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등 6개 제품에 달한다. 1회 위반

Table 1. Action result against the items violating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연 도	조사대상		생산판매 금지	등급 조정	표시사항 정정	기타(미신고) 조치
	품목	모델				
2005	14	160	2사 2 모델	9사 9 모델	3사 3 모델	2사 2 모델
2006	16	180	7사 9 모델	11사 11 모델	2사 2 모델	4사 4 모델
2007	17	228	16사 19 모델	13사 16 모델	4사 7 모델	4사 5 모델
2008	15	142	-	7사 7 모델	3사 3 모델	-
2009	19	179	5사 6 모델	2사 2 모델	2사 2 모델	-
2010	22	172	1사 1모델	6사 6모델	2사 2모델	-
2011	23	180	1사 1모델	4사 4모델	5사 6모델	-
2012	26	228	1사 1모델	9사 11모델	9사 9모델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자료 종합 [2,4,8-14]

조치가 있는 제품의 경우 전기냉방기, 전기밥솥, 백열전구, 어댑터·충전기,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등 8개 제품이 있다 [2,6,10-14].

2-7.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위반제품 및 위반업체의 점검결과

2007년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점검결과 전기냉방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에서 전년도 위반업체 중 1개 업체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미달, 등급표시위반이 반복된 사례가 있다. 전기냉방기의 경우 1개 업체 3개 모델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형광램프의 경우 1개 업체 1개 모델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형광램프용 안정기의 경우 1개 업체 1개 모델에서 등급표시위반 등으로 측정 결과 다시 위반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 2008년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점검결과 안정기 내장형 램프에서 전년도 위반업체 중 2개 업체 각각 1개 모델의 등급표시위반이 반복되었다. 2009년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점검결과 선풍기에서 전년도 위반업체 중 1개 업체 1개 모델의 표시사항위반이 반복된 바가 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요청한 선풍기의 7개 기업 9개 모델에 대한 측정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2010년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점검결과 전기진공청소기에서 전년도 위반업체 중 1개 업체 각각 1개 모델, 2011년 가정용가스보일러에서 전년도 위반업체 중 1개 업체 각각 1개 모델, 2012년 전기드럼세탁기, 안정기내장형램프에서 전년도 위반업체 중 각각 1개 업체 각각 1개 모델의 등급표시위반이 반복되었다 [2,6,10-14].

2-8.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문제점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문제점으로 사후관리 모델 표본의 선정 및 확보방식의 개선, 점검방식 보완, 위반여부별 관리방식 개선, 점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의 제품 선정 시 판매규모나 신규 제품여부 및 반복적 위반여부 등을 감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한 소비자가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행태를 반영한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목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을 통한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시료선정이 요청된다.

둘째로,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사후조치 발생여부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요청된다. 지난 5년간 등 특정주기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조치가 제기되는 제품과 위반조치가 없는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별 사후관리 방식의 강화여부에 고려가 제기된다.

셋째로, 현재 사후관리 대상의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로 공개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대상의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과정 전체에 대한 세부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3.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개선방안

3-1.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의 제품 선정 및 확보방식 개선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시료 선정은 1) 판매실적이 우수하고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제품,

Table 2. Improvement plan of post-monitoring by item subject to post-monitoring for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구분	대상 제품	비고
확인관리 대상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난방기 등 9개 제품(2012년 신규 포함제품 제외)	표시항목 내용 확인
측정관리 대상	전기냉장고,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전기드럼세탁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타충전기, 전기냉방기, 전기밥솥, 백열전구, 어댑타충전기,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등 17개 제품	표시항목 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측정 점검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 대상 품목 중 신제품으로 출시된 제품, 3) 과년도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의 제품의 모델 등을 선정하되, 4) 특히, 과년도 사후관리 결과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의 모델수 확대 및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비자가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행태를 반영한 선택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상기의 시료 선정원칙에 입각한 점검 제품의 선정을 목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연구기관, 소비자관련 기관, 인증기관 담당자 및 산업계 등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검토사항에 대해 열거하자면 1)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시료 선정원칙에 관한 설정, 2) 과년도 사후관리 점검 결과 검토, 3)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시료 선정내용 검토, 4) 당해년도 사후관리 추진계획안 검토, 5) 기타 사후관리 관련 중요사항 검토 등으로 들 수 있다.

3-2.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 제품 중 확인관리 위주의 사후관리 개선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조치 발생여부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5년간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의하면 위반조치가 제기되는 제품과 위반조치가 없는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별 사후관리 방식의 강화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제품별 위반조치 여부에 의거하여 표시항목 내용에 대한 확인관리 위주의 점검과 측정 위주의 점검방식으로 구분하여 사후관리 대상의 제품별 사후관리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점검결과 1회라도 위반조치가 없는 제품을 보면 전기세탁기, 전

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 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등 9개 제품이 있다.

이 경우 9개 제품을 중심으로 측정절차가 없이 제품안내물, 광고(지면, 인터넷 등) 등에 표기된 표시항목 확인 위주의 점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구체적 점검은 에너지효율 및 소비자관련 단체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내용확인 위주의 점검으로 실질적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들 제품에 대한 시료 측정 점검여부는 에너지효율관련 기술진전을 반영 약 3년 주기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 제품 중 측정관리 위주의 사후관리 개선

상기 9개 제품 이외에 5년 이내 1회 이상의 위반조치가 있는 17개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의 집중적 측정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들 제품을 중심으로 표시항목 확인 및 사후관리 측정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위반 사례가 심각한 특정 제품의 경우 점검 모델의 확대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전반적인 표시항목 확인 및 사후관리 측정 점검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향후 사후관리 점검결과에서 약 5년간 1회라도 위반조치가 없는 제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라벨표시 항목에 대한 제품안내물, 광고(지면, 인터넷 등) 등에 표기된 표시항목에 대한 내용 확인관리 위주의 점검으로 완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점검결과의 정보공개 확대 개선

현재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의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로 공개하

고 있다. 사후관리 대상의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과정 전체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으로 강구할 수 있다. 향후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위반업체 및 위반모델에 대한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위반업체 및 위반모델 뿐만 아니라 합격모델, 시험기관명 등에 대한 상세보고서 까지 모두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관리 점검결과 관련 정보 제공의 증진을 통해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등급제 표시위반이 없도록 철저한 준수요식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에너지효율등급제는 1992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후관리와 관련 2012년에는 조사품목 228개 모델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어댑터·충전기, 전기드럼세탁기, 선풍기 등 11개 품목 21개 모델이 불합격되었다. 이 결과 정부는 2012년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등급표시정정, 표시사항정정 등의 시정명령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제조·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의 벌칙에 처한다.

본고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를 감안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앞에서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제도의 시행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 도출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시료 선정은 지금까지 시행한 것처럼 과년도 사후관리 결과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의 모델수 확대 및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소비자가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행태를 반영한 선택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점검 제품의 선정심의를 목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사후조치 발생여부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5년간 사후관리 점검결과 1회라도 위반조치가 없는 제품을 보면 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 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등 9개 제품(신규 포함제품 제외)이 있다. 이들 제품을 중심으로 측정절차 없이 제품안내물, 광고 등에 표기된 표시항목에 대한 확인위주의 점검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9개 제품 이외에 수년내 1회 이상의 위반조치가 있는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의 집중적 측정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위반 사례가 심각한 특정 제품의 경우 점검 모델의 확대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전반적인 표시항목 확인 및 사후관리 측정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관리 점검결과 관련 정보 제공의 증진을 통해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등급제 표시위반이 없도록 철저한 준수요식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15.1.6)
2.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사후관리 추진사항, 내부자료, 2013.6
3.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기자재 제품별 모델별․등급별 생산(수입)·매실적, 내부자료, 2010
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 허위·미표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보도자료, 2014.2.6
5.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고시 제 2014-220호), 2014.11.28
6. 오영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유명무실,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10.21
7. 임기추, “주요국의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사례 분석,” 에너지공학, 제23권 제3호, 2014, 한국에너지 공학회
8. 산업통상자원부, 2006년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 최종 결과보고, 보도자료, 2007.1.25
9. 산업통상자원부, 2007년도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및 조치계획, 보도자료, 2008.4.14
 10. 산업통상자원부, 2010년도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추진계획, 보도자료, 2010.3.20.
 1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 시정명령, 보도자료, 2010.3.10
 1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키로, 보도자료, 2006.1.13
 13.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2008년 1차 사후관리 결과 및 조치계획, 보도자료, 2009.1.9
 14.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2008년 2차 사후관리 결과 및 조치계획, 보도자료, 2009.4.15